

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2. 12) 상정
-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2. 12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심 명 식)

가. 제안이유

-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각각의 문화시설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을 부천시 문화예술 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며, 이용률이 저조하여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부천역 문예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각각의 문화시설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을 부천시 문화예술 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함.(안 제7조)
- 문화시설 중에서 부천역문예전시관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함.
(안 제11조제1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부천역 문예전시관의 이용료는?	<input type="radio"/> 3만원임.
<input type="radio"/> 부천역 문예전시관의 활성화 방안은?	<input type="radio"/> 현행 유료이용에서 무료이용으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 음

나. 반대토론

없 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

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문화예술발전 및 주민복리를 위하여”를 “문화예술의 발전 및 주민 복리를 위하여 문화시설이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”를 “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의 대상 사업 시설”을 “「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”으로 한다.

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부천시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(이하 “복사골문화센터”이라한다)”를 “부천시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(이하 “복사골문화센터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부천문화의집(이하 “문화의 집”이라 한다)에는 문화시청각실(A/V감상실, 비디오부스, CD부스,휴게라운지)”을 “부천문화의집(이하 “문화의집”이라 한다)에는 문화시청각실(A/V감상실, 비디오부스, CD부스 및 휴게라운지를 말한다)”로 하고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(시설)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각각 설치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다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“체육관 등”을 “체육관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본문 및 가목 중 “문화의 집”을 각각 “문화의집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조제3호에

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라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심의)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8조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필요시”를 “필요한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8조(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직원을 두며,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문화의집은 수익을 위한 사업은 할 수 없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사용허가)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문화의집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에서의 “특별한 시설을 설치”란 문화시설의 기존 시설 외에 공연행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, 음향, 무대 등의 특수설비를 특별히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(사용료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민회관·복사골문화센터 및 오정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

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문예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 본문 중 “인정할 경우”를 “인정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”을 “운영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실비만을”을 “실비를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관람권, 예매권(이하 “관람권”이라 한다)”을 “관람권 및 예매권(이하 “관람권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“사전”을 “사전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시행”을 “판매 및 회수에 관한 사무는 사용자가 관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사용료 감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1. 시(구와 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2. 「교육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3.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행사
4. 시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

제15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30일전”을 “30일 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7일전”을 “7일 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부대시설의 경우 사용전일”을 “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사용 전일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문화시설 사용자”를 “사용자”로 하고, “만료전”을 “만료 전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문화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”을 “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”으로 하고, “설비 등을 사용자가”를 “설비 등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규정에 의한”을 “이 조례에 따른”으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사용자는 철거일부터 5일 이내에 철거 시설물은 시장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)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9조제2항 중 “기간내”를 “기간 내”로 하고, “훼손하였을때에는”을 “훼손하였을 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용함에 있어 시설내”를 “사용하는 과정에 시설 내”로 한다.

제20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장내”를 “시설 내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타인”을 “다른 사람”으로 하고, “방해가 될”을 “방해가 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 을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3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37호
의결 년월일	2008. 12. 22. (제148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11. 1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각각의 문화시설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을 부천시 문화예술 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며, 이용률이 저조하여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부천역문예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각각의 문화시설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을 부천시 문화예술 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함.(안 제7조)
- 나. 문화시설 중에서 부천역문예전시관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함.
(안 제11조제1항)

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문화예술발전 및 주민복리를 위하여”를 “문화예술의 발전 및 주민 복리를 위하여 문화시설이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”를 “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의 대상 사업 시설”을 “「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”으로 한다.

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부천시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(이하 “복사골문화센터”이라한다)”를 “부천시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(이하 “복사골문화센터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부천문화의집(이하 “문화의 집”이라 한다)에는 문화시청각실(A/V감상실, 비디오부스, CD부스,휴게라운지)”을 “부천문화의집(이하 “문화의집”이라 한다)에는 문화시청각실(A/V감상실, 비디오부스, CD부스 및 휴게라운지를 말한다)”로 하고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(시설)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각각 설치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다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“체육관등”을 “체육관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본문 및 가목 중 “문화의 집”을 각각 “문화의집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조제3호에

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라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심의)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8조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필요시”를 “필요한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8조(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직원을 두며,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문화의집은 수익을 위한 사업은 할 수 없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사용허가)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문화의집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에서의 “특별한 시설을 설치”란 문화시설의 기존 시설 외에 공연행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, 음향, 무대 등의 특수설비를 특별히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(사용료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민회관·복사골문화센터 및 오정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

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문예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 본문 중 “인정할 경우”를 “인정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”을 “운영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실비만을”을 “실비를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관람권, 예매권(이하 “관람권”이라 한다)”을 “관람권 및 예매권(이하 “관람권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“사전”을 “사전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시행”을 “판매 및 회수에 관한 사무는 사용자가 관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사용료 감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1. 시(구와 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2. 「교육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3.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행사
4. 시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

제15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30일전”을 “30일 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7일전”을 “7일 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부대시설의 경우 사용전일”을 “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사용 전일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문화시설 사용자”를 “사용자”로 하고, “만료전”을 “만료 전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문화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”을 “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”으로 하고, “설비 등을 사용자가”를 “설비 등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규정에 의한”을 “이 조례에 따른”으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사용자는 철거일부터 5일 이내에 철거 시설물은 시장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)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9조제2항 중 “기간내”를 “기간 내”로 하고, “훼손하였을때에는”을 “훼손하였을 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용함에 있어 시설내”를 “사용하는 과정에 시설 내”로 한다.

제20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장내”를 “시설 내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타인”을 “다른 사람”으로 하고, “방해가 될”을 “방해가 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 을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3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2]

문화시설사용료(제11조제1항 관련)

1. 기본시설

사 용 시 간	사 용 료(원)				비 고
	시 민 회 관		복 사 골 문화센터 대공연장	오 정 아트홀	
	대공연장	소공연장			
오 전 (09:00~12:00)	120,000	60,000	100,000	40,000	1. 구간 사용 시간이 미달되어도 구간요금 적용 2. 공연준비 및 연습일 경우에는 50퍼센트 할인 적용 3. 휴일(토·일요일, 국경일)의 경우에는 50퍼센트 가산 적용 4. 전일(09:00~17:00)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금액의 200퍼센트 적용
오 후 (13:00~17:00)	150,000	80,000	120,000	60,000	
야 간 (18:00~22:00)	200,000	110,000	150,000	80,000	
철 야 (22:00 이후) 시간당	50,000	30,000	40,000	20,000	

※ 부가가치세는 별도임.

2. 부대설비

구분	설비명	기준	사 용 료(원)				비고
			시 민 회 관		복 사 콜 문 화 센터 대 공연장	오 정 홀 아트홀	
			대 공연장	소 공연장			
악 기	그랜드피아노 (STEIN WAY)	1일/1대	50,000				조율비 별도
	그랜드피아노(국산)		30,000				
	업라이트피아노		15,000				
	디지털피아노		15,000				
음 향	기본사용료	1회	50,000	30,000	40,000	30,000	마이크 3대, 재생 1대
	유선마이크 추가	1회/1대	3,000				
	무선마이크 추가	1회/1대	10,000				건전지 별도
	재생기기 추가	1회/1대	8,000				
	녹음	1회/1개	10,000				녹음용 미디어 별도
	이동식음향콘솔	1회/1대	20,000				
조 명	종합조명	1회	80,000	50,000	70,000	50,000	별도 전기료 없음.
	일반조명	1회	40,000	25,000	35,000	25,000	객석 조명만 사용 시
	팔로우스포트	1회/1대	20,000				신청자 운용
	포그머신	1회/1대	10,000				포그액 별도
	드라이아이스	1회/1대	20,000				드라이아이스 별도
	스트로보	1회/1대	10,000				
	기타 이펙트라이트	1회/1대	10,000				
무 대	무대부대설비	1일	20,000				
	덧마루	1회	15,000				합창단용 계단 포함
	스크린	1회	20,000	10,000	15,000	15,000	
	회전무대	1회	-	-	20,000	-	
	음향반사판	1일	30,000	-	20,000	20,000	
	무용고무판 (DANCE FLOOR)	1일	30,000	-	20,000	15,000	접착테이프 별도
영 사	영사기(35mm)	1회상영	30,000	-	30,000	30,000	영사음향 포함
	영사기(16mm)	1회상영	15,000				
	환등기	1회/1대	10,000				
	OHP	1회/1대	10,000				
	빔프로젝터	1회/1대	20,000				
냉·난방료	연료비 및 전기료	1시간	시 가				공연시간 의무사용 기온에 따른 적용여부는 시설 관리자가 결정함.
기 타	귀빈실	1실/1일	30,000				시민회관 A귀빈실 제외
	분장실	2실/1일	20,000				남·녀 분장실
	의자, 연대, 테이블	1일	10,000				
	현수막 게첩	1개소	5,000				내부 및 외부 게첩
	영화·비디오 촬영료	1회	10,000				
	TV·라디오 중계료	1회	10,000				
전 기	전력사용료	사용량	시 가				

※ 부가가치세는 별도임.

3. 기타시설

구 분		사용시간 또는 기간	사용기준	사용료(원)	비 고
세미나실	소	2시간	30인용	2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공요금 포함 · 강좌실 등 유사한 시설은 세미나실 기준을 적용함.
	중	2시간	50인용	30,000	
	대	2시간	80인용	40,000	
전 시 실		1일		40,000	· 공공요금 포함
합숙시설		1실/1박	6인기준	6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추가 1인당 5,000원 · 청소년 단체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음.
체 육 관		2시간		2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공요금 중에서 냉·난방료 별도 · 초과 1시간당 10,000원 추가함.

※ 부가가치세는 별도임.

4. 스포츠센터

구 분		기 준	사 용 료(원)			비 고
			어린이	청소년	일 반	
수 영	강 습	1인/월	40,000	45,000	55,000	· 주 3회 강습
	자유이용	1인/월	35,000	40,000	45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어린이 : 초등학생 이하 · 청소년 : 중·고등학생 · 일 반 : 대학생 이상
	1일이용	1인/월	3,000	3,500	4,000	
스 퀴 시		1인/월	-	51,000	68,000	· 주 3회 강습
에어로빅		1인/월	-	45,000	45,000	
헬 스		1인/월		35,000	50,000	

※ 부가가치세는 별도임.

5. 평생교육 수강료

구 분	기 준	사용료(원)	비 고
평생교육	1인/월 주 3시간 미만	12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초과 1시간당 2,500원까지 징수 · 평생교육의 성격상 부대비용 등이 소요되는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비를 조정할 수 있음. ·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

6. 보육료

구 분	기 준	사 용 료(원)	비 고
보육료	1인/월	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 단가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	시간 보육은 안분비율에 의거 징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와 그 <u>운영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운영방향)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문화예술 발전 및 주민복리를 위하여</u>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위탁관리) ①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<u>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</u>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<u>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의 대상사업</u> 시설은 제외한다.</p> <p>제5조(시설) 문화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및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	<p>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운영에</u>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운영방향) ----- -----<u>문화예술의 발전 및 주민 복리를 위하여 문화시설이</u>----- -----.</p> <p>제4조(위탁관리) ① ----- <u>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「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</u>-----.</p> <p>제5조(시설)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각각 설치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(생 략)</p> <p>2. 부천시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(이하 “복사골문화센터”이라 한다)에는 여성청소년문화센터, 청소년문화센터 및 보육정보센터와 부대시설</p> <p>3. 부천문화의집(이하 “문화의 집”이라 한다)에는 문화시청각실(A/V감상실, 비디오부스, CD부스, 휴게라운지), 문화관람실, 문화창작실, 문화사랑방, 개인연습실 및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</p> <p>4. 5. (생 략)</p> <p>제6조(사업) 문화시설별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 가. 나. (생 략) 다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2. (생 략) 가. 나. (생 략) 다. 공연장, 수영장, 체육관 등 문화·체육시설 운영</p> <p>라.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상 필요한 사업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부천시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(이하 “복사골문화센터”라 한다)----- ----- -----</p> <p>3. 부천문화의집(이하 “문화의 집”이라 한다)에는 문화시청각실(A/V감상실, 비디오부스, CD부스 및 휴게라운지를 말한다) ----- -----그 밖에----- -----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사업) ----- -----다음 각 호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가.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그 밖에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 가.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-----체육관 등 -----</p> <p>라. 그 밖에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3. 문화의 집</p> <p>가.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</p> <p>다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4. (생략)</p> <p>가.~다. (생략)</p> <p>라.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3. 문화의 집</p> <p>가. 문화의 집----- -----</p> <p>나. 제5조제3호에 따른----- -----</p> <p>다. 그 밖에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~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그 밖에----- ----- -----</p>
<p>제7조(위원회 운영) ①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운영위원회는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호선한다.</p> <p>③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한다.</p> <p>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의 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⑤운영 위원회 위원에게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심의)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관리운영) ①문화의집 운영자는 3명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며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문화의집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.</p> <p>②문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명예봉사관을 둘 수 있다.</p>	<p>제8조(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직원을 두며,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 문화의집은 수익을 위한 사업은 할 수 없다.</p> <p>② ----- -----필요한 때에는----- -----.</p>
<p>제9조(사용허가) ①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같다.</p> <p>②문화의집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.</p> <p>③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특별한 설치라 함은 문화시설의 기존 시설외에 특별히 시설하는 것으로 공연행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, 음향, 무대 등 특수설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제9조(사용허가)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문화의집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제1항에서의 “특별한 시설을 설치”란 문화시설의 기존 시설외에 공연행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, 음향, 무대 등의 특수설비를 특별히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</p> <p>7.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p> <p>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중대히 위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</p> <p>③제2항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	<p>제10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7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② -----<u>각 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사용료) ①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1. 시민회관, 문화센터, 오정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<u>별표 2에 의한 사용료</u></p> <p>2. 문예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<u>별표 3에 의한 사용료</u></p> <p>②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사용료) ① <u>시민회관·복사골문화센터 및 오정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문예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2조(이용료) 문화의집 시설의 이</p>	<p>제12조(이용료)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용료 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프로그램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 할 수 있다.</p>	<p>----- 인정하는 경우에는----- -----운영에 따른----- -----실비를-----</p>
<p>제13조(관람료) ① (생략) ②관람료는 관람권, 예매권(이하 “관람권”이라 한다)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. ③관람권의 대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시행하고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.</p>	<p>제13조(관람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관람권 및 예매권(이하 “관람권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사전에----- ----- ③ -----판매 및 회수에 관한 사무는 사용자가 관장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4조(사용료 감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1. 시(구,동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)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100퍼센트 2.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100퍼센트</p>	<p>제14조(사용료 감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 1. 시(구와 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. 「교육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.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라</p>

현행	개정안
<p>3. <u>문예진흥법 제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사는 사용료의 100퍼센트</u></p> <p>4. <u>시에서 후원, 협찬하는 행사 또는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</u></p> <p>제15조(사용료 반환) <u>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사용일 30일전까지</u>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. <u>사용일 7일전까지</u>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4. (생략) 5. <u>부대시설의 경우 사용전일까지</u>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<p>제16조(사용중단 신고) <u>문화시설</u> <u>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에</u>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7조(원상복구) ① <u>문화시설 사용자</u></p>	<p>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사</u></p> <p>4. <u>시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</u></p> <p>제15조(사용료 반환)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<u>30일 전</u>----- ----- 3. -----<u>7일 전</u>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사용 전 일</u>----- ----- <p>제16조(사용중단 신고) <u>사용자</u>--- -----<u>만료 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7조(원상복구) ① <u>사용자는 사용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가 <u>사용기간</u>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<u>설비 등을 사용자가</u>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<u>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</u>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<u>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일로부터 5일이내에</u> 인수하여야 한다.</p>	<p><u>허가 기간</u>----- ----- -----<u>설비 등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<u>이 조례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<u>이 경우</u> <u>사용자는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</u> <u>에 철거 시설물은 시장으로부터</u> <u>인수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8조(권리의 양도금지) <u>사용허가</u>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<u>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</u>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8조(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) <u>사용자는</u>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<u>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</u>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제19조(손해배상) ① (생략)</p> <p>②<u>사용자가</u> <u>사용허가 기간내</u>에 문화시설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<u>사용자가</u>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③<u>사용자는</u> <u>허가받은 목적으로</u> <u>사용함에 있어</u> 시설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</p>	<p>제19조(손해배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기간 내</u>----- ----- -----<u>훼손하였을 때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<u>사용하는 과정에</u> <u>시설 내</u>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0조(입장제한) <u>다음 각호의 1에</u>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장내</u> 흡연자 및 만취자 3. <u>타인에게</u> 위협을 주거나 <u>방해</u>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. <u>기타</u> 안전관리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	<p>제20조(입장제한)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시설 내의</u>----- 3. <u>다른 사람</u>-----<u>방해</u>가 되는----- 4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
<p>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1조(시행규칙) -----<u>시행</u>에----- -----.</p>